

[별표 10]<개정 1995.8.31>

검사의 면제 대상범위(제35조제1항제1호관련)

검사대상기기명	대 상 범 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1. 소용량강철제보일러 2. 소형관류보일러. 3.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8㎡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3.5kg/cm ² 이하인 것	용접검사
	1. 주철제보일러	구조검사
	1. 전열면적3.5㎡이하의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mm 이상 인증기관이 부착된 것. 나. 수두압이 5m이하이며 안지름이 25mm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2.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유류 및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출력이 50만kcal/h미만인 것. 나. 대기개방형인 것. 다.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온수보일러	1.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0만kcal/h)를 초과하는 가스용 온수보일러	제조검사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1.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2. 동체의 두께가 6mm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kg/cm ²)과 내용적(m ³)과의 곱한 수치가 0.2(난방용은0.5)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	용접검사

	압력이 3.5kg/cm ²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600mm이하인 것	
	1. 2중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철금속가열로	1. 철금속가열로	제조검사 및 계속사용안전검사 중 운전성능부문을 제외한 검사